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요금표

2013. 3. 4 제정
2014. 4. 10 개정
2015. 12. 9 개정
2016. 4. 25 개정
2016. 11. 14 개정
2018. 10. 12 개정
2019. 5. 31 개정

□ WEB 서비스 요금제

○ 건별 요금제

- 건별 요금제 서비스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평가(개별특허평가, 평가보고서) 기능을 제공한다.

구분	기본요금 (부가세포함)	30% 감면	40% 감면	50% 감면
한국	5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한국외	5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 연간 요금제 제공 서비스

- 한국특허 연간요금제와 통합 연간요금제가 있으며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요금제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에 대한 평가, 평가보고서(요약, 상세, 엑셀)- 개별특허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특허분석맵, 특허인용맵, 특허히스토리맵, 유사특실분석 등- 기업특허경쟁력 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분석, 기업간 분석 등- 특허기술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WIPO 5대 기술분류 분석, IPC 분류 분석 등- 유사특실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특허, 공개특허

o K 연간요금제(한국특허)

이용가능건수	기본요금 (부가세 별도)	30%감면 (부가세 별도)	40%감면 (부가세 별도)	50%감면 (부가세 별도)
30,000건	4,500 만원	3,150 만원	2,700 만원	2,250 만원
25,000건	4,000 만원	2,800 만원	2,400 만원	2,000 만원
20,000건	3,400 만원	2,380 만원	2,040 만원	1,700 만원
15,000건	2,850 만원	2,100 만원	1,710 만원	1,500 만원
10,000건	2,000 만원	1,400 만원	1,200 만원	1,000 만원
5,000건	1,500 만원	1,050 만원	900 만원	750 만원
3,000건	1,000 만원	700 만원	600 만원	500 만원
1,000건	500 만원	350 만원	300 만원	250 만원
500건	300 만원	210 만원	180 만원	150 만원

- 주1) - 개별특허평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를 평가할 때마다 건수가 차감된다.
 - 평가정보는 매월 갱신되며 평가점수/등급이 변동된다.
 - 이용자가 이미 평가했던 특허에 대한 갱신된 평가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개별특허평가 기능을 이용하여 재평가 해야하며 평가 건수가 차감된다.

o T 연간요금제(통합)

이용가능건수	기본요금 (부가세 별도)	30%감면 (부가세 별도)	40%감면 (부가세 별도)	50%감면 (부가세 별도)
30,000건	9,900 만원	6,930 만원	5,940 만원	4,950 만원
25,000건	8,500 만원	5,950 만원	5,100 만원	4,250 만원
20,000건	6,950 만원	4,865 만원	4,170 만원	3,475 만원
15,000건	5,240 만원	3,668 만원	3,144 만원	2,620 만원
10,000건	3,500 만원	2,450 만원	2,100 만원	1,750 만원
5,000건	2,250 만원	1,575 만원	1,350 만원	1,125 만원
3,000건	1,750 만원	1,225 만원	1,050 만원	875 만원
1,000건	1,250 만원	875 만원	750 만원	625 만원
500건	650 만원	455 만원	390 만원	325 만원

- 주2) - 개별특허평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를 평가할 때마다 건수가 차감된다.
 - 평가정보는 매월 갱신되며 평가점수/등급이 변동된다.
 - 이용자가 이미 평가했던 특허에 대한 갱신된 평가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개별특허평가 기능을 이용하여 재평가 해야하며 평가 건수가 차감된다.

※ 「DATA 서비스 요금제」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IP 서비스 기업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면율	요금 규정 내용	관련기관
50%	「개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반 개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40%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금융기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디블 등 금융위원회 지정 기술신용평가기관(TCB)와 TDB 운영사
30%	국·공립 연구기관	농업기술연구소·가축위생연구소·농업기계화연구소·맥류연구소·농약연구소·임목육종연구소·국립수산진흥원·작물시험장·원예시험장·잠업시험장·축산시험장·고령지시험장(高嶺地試驗場)·임업시험장·잠종장(蠶種場)·종축장, 기상연구소, 국립천문대,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각 시·도 보건연구소,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수산물검사소, 국립생사검사소(國立生絲檢査所), 국립공업시험원과 그 산하의 각 지방 공업시험소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연구재단·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인삼연초연구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 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대학, 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및 지역기술이전센터 등 - 경기지역기술이전센터, 인천지역기술이전센터, 경기대진지역기술이전센터, 충남지역기술이전센터, 충북지역기술이전센터, 강원지역기술이전센터, 광주지역기술이전센터, 전북지역기술이전센터, 전남지역기술이전센터, 부산지역기술이전센터, 경북지역기술이전센터, 대구지역기술이전센터, 포항지역기술이전센터, 울산지역기술이전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0 감면 대상 증빙서류

대상	증명서류
개 인	없음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국·공립 연구기관	없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없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없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없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없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없음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TDB 운영사	없음